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74

발의연월일: 2021. 11. 22.

발 의 자 : 아수진비 · 양정숙 · 강민정

천준호 · 노웅래 · 강병원

임종성 • 윤준병 • 민형배

김승남 • 윤미향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기상청장이 관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보의무 이외에 기상청장과의 협의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 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23조). 법률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알려야"를 "미리 알리고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알리지"를 "미리 알리지 아니하거나 기상청장과 협의하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	②
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서면으로 그 내용을 <u>알려야</u>	
한다.	고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시정 권고) 기상청장은 다	제23조(시정 권고)
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	2
시설의 설치·교체·이전 또	
는 폐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u>u]</u>
<u>알리지</u> 아니한 경우	리 알리지 아니하거나 기상청
	<u>장과 협의하지</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